

제 호

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서

납부 의무자	조합의 명칭			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		
	대표자	성명		전화번호	

통지 내용	대상 사업명			
	최초	기준시점	예정액	
	직전연도	기준시점	예정액	
	현재	기준시점	예정액	
	그 밖의 사항			

「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

귀하